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서	
주민등록번호		명	
주소			
용도	매도 용도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매도 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의 경우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용도의 매도용란에 매수자인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용도의 일반 용도(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대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자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